



10

[2019. 6. 24.] [2019 - 88 , 2019. 6. 24.,]

() 044 - 200 - 5506

1

1 () 「 」 3 , 5 5 2 ,
64 1 . < 2011.
01. 03, 2014. 01. 01 >

2 ()

- 1. " " 10 .
- 2. " " .
- 3. " " ,
가 0.8
- 가 1.5 " "
- 4. " " 30 30 . < 2019. 01. 17 >
- 5. " " 「 」 5 1 1) . < 2019. 06. 24 >

3 () 「 」 3 ,
. < 2014. 01. 01 >

4 () ,
. < 2014. 01. 01 >
가

2

5 () 가 ,
가 , (FRP), ,
「 」 3

1 가 15 1 "

"

6 ()

. < 2014. 01. 01 >

7 () 6 (

" ")

. < 2014. 01. 01 >

총 톤 수	코밍의 높이(밀리미터)
5톤 이상	75
5톤 미만	50

1

8 () 6

450

가

. < 2019. 01. 17 >

1

5

. < 2014. 01. 01, 2019. 01. 17 >

1

3

7 1

9 () 6

7

가

1

1

2

7 1

10 () ()
 . , ,
 . < 2014. 01. 01 >

11 () 가
 . , .
 . < 2014. 01. 01 >

1. 각 현의 방수구 면적의 합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A = \frac{2 \times m \times h}{100}$$

이 식에서

A는 방수구의 면적(제곱미터)

m은 월의 길이(미터). 이 경우 월의 길이가 배의 길이의 70퍼센트를 초과하면 배의 길이의 70퍼센트로 할 것

h는 불워크의 높이(미터)

2. 방수구의 하단은 실행할 수 있는 한 갑판에 가깝게 할 것

3. 방수구 면적의 3분의 2는 배의 길이(L)의 중앙로부터 앞뒤 $\frac{1}{2}L$ 의 범위 내에 배치하고, 3분의 1은 월의 나머지 길이에

12 () 5 5
 . , 2
 . < 2014. 01. 01 >

1. 0.05 0.13 . ,
 . < 2014. 01. 01 >

2.

13 () , 600 가
 . , ,
 . < 2014. 01. 01 >
 가 2 1
 . ,
 . < 2014. 01. 01 >

3

1

14 ()

가

가

< 2014. 01. 01 >

15 ()

가

16 ()

2

17 ()

(" ")

가

22.5

10

가

가

(lever),

가

가

가 가

가

가

18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19 ()

1.2

. < 2014. 01. 01 >

20 ()

가 가

가

21 ()

가

가

22 ()

1.

가

2.

. < 2014. 01. 01 >

23 ()

. < 2014. 01. 01 >

()

가

(

)

24 ()

(

가

가) . <2014. 01. 01>

100 15

가

25 ()

3

60

26 ()

가

가

27 ()

(Distance piece)

2019. 01. 17>

1

28 ()

가

3

29 (,) (「 」) , 「 」 .

30 () 가
가 .

4

31 () (Q) 가 1

1 1 . < 2014. 01. 01 >

$$Q = 100 + 120(L - 10) \left(\frac{1}{L} \right)$$

L () . , L 10 10 .

32 ()

5 . .

33 ()

1.

2.

34 () 2

35 () 2

. < 2014. 01. 01 >

6

1

36 () 가 (" ") 가

37 () 가

- 1.
- 2.
- 3.
- 4.

38 () (" ")

구 분	전 압
조명설비, 전기기구 및 전열기기	250 볼트
동력장치	500 볼트

39 ()

구 분	절연저항의 값(메그옴)
회전기	$\frac{\text{정격전압} \times 3}{\text{정격출력(KW 또는 KVA)} + 1,000}$
전 로	0.1
배전반	1.0

2

40 () 가 가

3

41 ()

가

1

42 ()

4

43 ()

44 ()

100

5

45 ()

1

가

1.

가 가

(,) 가

2.

가

가

3.

가

46 ()

3

3

3 4

< 2014. 01. 01 >

47 ()

48 ()

50

6

49 ()

50 ()

가

7

1

51 ()

「 」 2

「 」 1 158.
, 5 . < 2019. 06. 24 >

52 ()

3

53 () ()

. < 2019. 06. 24 >

54 ()

55 ()

. < 2014. 01. 01 > < 2019. 06. 24 >

56 ()

가

가

2

57 () 「 」 3

58 () 2 ()

(ABC) 가 2 가

- 1.
- 2.

59 ()
가

구분	비치수량
총톤수 5톤 미만	간미식 또는 휴대식 포말, 분말이나 탄산가스 소화기 1개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낙시머선으로 사용하려면 거주구역에 1개 추가). 이 경우,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개정 2014. 01. 01, 2019. 01. 17>
총톤수 5톤 이상	휴대식 포말, 분말이나 탄산가스 소화기 1개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낙시머선으로 사용하려면 거주구역에 1개 추가). 이 경우, 거주구역에는 탄산가스소화기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개정 2014. 01. 01>
비교) 1. 휴대식 소화기 1개당 간미식 소화기 2개로 대응할 수 있다. 2. 2톤 미만 머선은 양동미 등 소화기를 대체할 수 있는 설비를 비치할 경우 소화기 비치면 제함. <개정 2014. 01. 01>	

60 () , (" ")

< 2014. 01. 01 >

- 1.

2.

3. 2

가.

0.3

.

0.6

,

0.9

4.

가

0.3

61 (가) 가 「 」 139 . < 2014. 01. 01 >

8 .

62 () (" ") . , . < 2011. 01. 03, 2014. 01. 01, 2019. 01. 17 >

1. 5

2. () 5

3. . , . ,

1 , 「 」

1. .

2. , ()

< 2011. 01. 03, 2014. 01. 01 >

3. . 가 .

. 1 40 , 40 . < 2019. 01. 17 >

62 2() 8 . < 2019. 01. 17 >

1.

2. 「 」 6 , 9
 11 , 가 () 5
 1 2 1.3 「 」
 .< 2019. 01. 17>

63 ()
 1.
 2.

64 ()
 13 「 」 25
 .< 2011. 01. 03> < 2019. 06. 24>

1.
 가. 가 1 1
 () 0.45
 0.40 0.3 가
 0.45
 2. < 2011. 01. 03>

$$\frac{353 \times (0.55L \cdot B \cdot D)}{1000} + 3$$

이 식에서
 L은 배의 길이(미터). 다만, 선외기를 거치한 어선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측정 길이로 한다.

B는 배의 너비(미터)

D는 배의 깊이(미터)

3.
 × 2 + 3
 가. 3
 1) 3)
 (船首材 :)
 8 1

1)

규모(톤)	볼워크를 포함한 핸드레일의 높이 (밀리미터)
3톤 미만	700
3톤 이상 5톤 미만	800
5톤 이상 7톤 미만	900
7톤 이상	1000

2) 1,800

3) 380 230

(船尾 長出甲板 :

)

() 13 「 」

1 ()

1 1 () 0.45

13 「

」 3 13

, 1 .< 2011. 01. 03>

1.

2. 8 1

3. (舷側水道 : 가 가)

0.6

1 2 1 12

2 1 .< 2014. 01. 01>

가 1 2
.< 2011. 01. 03>< 2014. 01. 01>

65 () < 2011. 01. 03>

66 ()

67 ()

68 (가) 가

9

69 () 4

1

「 」

- 1.
- 2.
- 3.
- 4.
- 5.
- 6. < 2014. 01. 01 >

69 2() 가 69 70

(視認)

「 」

「 」 6 , 9 11 , 가

- 1. 1
- 2.

70 ()

- 1.
- 2.
- 3. 2.5 , 12 2.5
- 4. 1

- 1.

2. , 1

1.

2. 가

1.

2. 가 가

2 3

1. 가 (20

.) 2 1 . ,

2. 3

3. 2

4. 1 가 0.9

71 () 5 2 1 「

」 191 . < 2014. 01. 01 >

72 () 2 .

1. 5

가. ()

. < 2019. 06. 24 >

2. ()

1 1 . < 2011. 01.

03, 2014. 01. 01 >

1.

2. 「 」 6 , 9 11 , 가 (" "

) . . . < 2014. 01. 01 >

3. 「 」 8 27 1 . 3

< 2019. 01. 17 >

4.

5.

6. 5 ,

(8 1)

7. 「 』 41 3 1 가 . , () 5 .< 2019. 01. 17> 2 3 7 「 .< 2019. 01. 17>

73 () 「 . 」 2019 1 1 3 (3 12 31)

< 2009 - 406 ,2009.12.14.>

1 () . 2 () 가 3 () 71 2 2010 7 1 4 () 72 2005 10 25 () () 72 () 2005 10 25 () 2010 7 1

5 () 2012 12 13 “ 「 . 」 (248)” 7 3 2 .

< 2010 - 144 ,2011.1.3.>

1 () . 2 () 2014 1 2 “ 「 . 」 (248)” 7 3 2 .

< 2013 - 279 ,2014.1.1.>

1 () . , 69 2 4 30

2 () 69 2 4

, 2005 10 25

() 2015 1 1

1 「 」 185 2
가 가

< 2015 - 18 ,2015.2.26.>

1 () 30

2 () (“ ”)
)

3 () 58

1. 5 2015 9 1

2. 2 5 2016 1 1

4 () 62 2 2015 3 25

5 () 72

1. 3 5 : 2016 1 1

2. 2 3 : 2017 1 1

6 () 4

1. 5 10 : 2015 9 1

2. 2 5 : 2016 1 1

3. 2 : 2016 7 1

< 2019 - 8 ,2019.1.17.>

1 ()

2 ()

< 2019 - 88 ,2019.6.24.>

1 ()

2 ()

3 ()

“ ”, 「 」 “ ” “ ”
「 」 21 22

[별표 1]

선체구조 강도시험 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판두께 측정에 의한 강도시험 기준

가. 강도시험방안서

강도시험 전에 강도시험방안서(시험일시, 시험장소, 두께측정기관, 최외판 종류 등이 기재된 것)를 제출받아 시험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한다.

나. 판두께에 의한 강도시험 계산식

1) 단판구조의 판 두께는 다음 계산식(이하 “판두께 측정 계산식”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75 \cdot a \cdot W \cdot L \cdot \alpha \leq D \cdot (2 \cdot td \cdot Bd + \frac{1}{3} \cdot ts \cdot D \cdot \frac{2 \cdot tb \cdot B + ts \cdot D - 2 \cdot td \cdot Bd}{ts \cdot D + tb \cdot B}) \times 10^3$$

L : 배의 길이

B : 선체 중 가장 폭이 넓은 부분에서 늑골의 외면에서 외면까지의 수평거리

D : L의 중앙에서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상갑판 보의 선측에 있어서의 상면(무갑판 선에 있어서는 현단)까지의 수직거리

a : 활주정($V/\sqrt{L} \geq 9$)에 있어서는 1.25

비활주정($V/\sqrt{L} < 9$)에 있어서는 1.00

V : 만재상태 계획속력(노트) 또는 최고속력(노트), 다만, 속력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활주정으로 간주한다.

W : 만재배수량(톤)

다만, 길이 15미터 미만의 FRP 재질 어선은 다음 계산식으로 만재배수량(톤)을 계산할 수 있다.

$$W = 0.5 \cdot L \cdot B \cdot d$$

d : 만재상태에서의 흘수로서 다음 계산식의 값으로 한다.

$$d = D - (f - \frac{0.076 N + w}{0.78 L \cdot B})$$

f : 경하상태에서 배의 길이 중앙에서의 건현

N : 최대승선인원

w : 재화중량(톤)

td : 상갑판의 두께(밀리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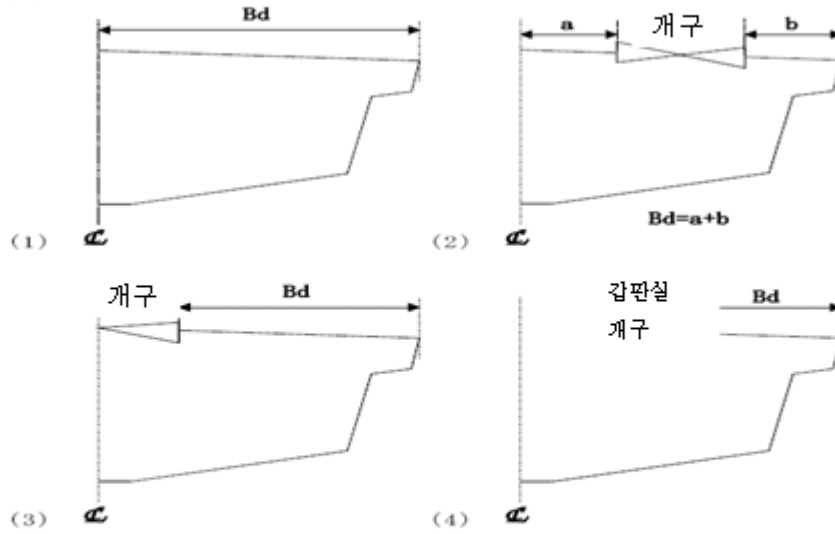
ts : 선측외판의 두께(밀리미터)

tb : 선저외판의 두께(밀리미터)

Bd : 상갑판의 한쪽 현의 폭(미터) (그림 1 참조)

α (수정계수) : “1” 또는 해당 어선의 외판 및 갑판의 굽힘강도(σ)가 10kg/mm^2 를 넘는 경우에는 “10/해당 어선 시험편의 굽힘강도”. 다만, 풍일 성형

작업장에서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동일 성형법으로 적층한 적층판의 시험편을 시험 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림 1) Bd의 측정법

2) 샌드위치 구조의 판두께는 아래 사항에 따라 판두께 측정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판두께(t_d , t_s 및 t_b) 값은 FRP 내층 및 외층의 판두께 합계치에 강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심재의 판두께를 더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목재 심재는 그 판두께에 해당 목재와 FRP적층판과의 인장 탄성계수의 비를 곱해 산정한다. 또한 미송, 나왕 및 구조용 합판에 대해서는 이 비를 다음의 표의 값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발사재 및 경질플라스틱 발포제는 판두께에 산입시키지 않는다.

심재의 종류	계수
미송	1.0
나왕	1.0
구조용 합판	0.8

나) 샌드위치구조의 어선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선체의 적층스케줄 또는 적층요령도를 제출받아 적층판의 내층 및 외층의 두께와 심재의 종류 및 두께를 확인할 것. 다만, 외판 및 갑판의 적층판에서 시험편을 채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층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성형작업장에 있어서 실제로 제조자가 사용하고 있는 심재의 종류 및 판두께를 확인할 것. 다만, 외판 및 갑판의 적층판에서 시험편을 채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층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별도건조검사 대상 어선으로서 상기 (1) 및 (2)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층판의 내층 및 외층의 두께를 확인할 것. 이 경우 심재의 두께는 판두께 측정

계산식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판두께 측정방법

1) 적용

이 방법은 조립식(볼트 등으로 조립한 것을 말한다) 외의 FRP 재질의 선체에 적용한다.

2) 측정방법

(가) 상갑판, 선측 및 선저외판의 판두께 측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갑판은 선수로부터 L/3, L/2, 2L/3 지점에서 양현 각 1개소 이상을 측정한다.(6개소 이상)

(2) 선측 및 선저외판은 선수로부터 L/3, L/2, 2L/3 지점에서 양현 각 2개소 이상을 측정한다.(선측 및 선저외판 각 12개소 이상)

(나) Bd 는 별지 1의 L/3, L/2, 2L/3 지점에서 각 양현을 측정하고, 각 양현의 측정값 중 최소 값을 판두께 측정 계산식에 적용한다.

(다) 샌드위치 구조의 판두께는 심재부를 제외한 적층판의 내층 및 외층의 각각의 두께를 상기 (1) 및 (2)의 지점에서 측정한다.

(라) 선체의 상당한 구간에 걸쳐서 선저와 선측이 각을 이루며 만나는 차인(Chine) 과 같이 단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 및 곡선부분을 피하여 판두께를 측정한다. 또한, 이음부분의 중첩부분 등 주변의 측정값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다른 판두께가 측정된 경우에는 해당 측정점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을 측정한다.

(마) 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받는 어선의 판두께 측정은 선박검사원의 입회 하에 두께측정업체 또는 선박검사원이 측정하여야 한다.

(바) 선박검사원은 다음의 판두께측정표에 측정결과를 기록하고, 판두께 측정 계산식에 따라 강도의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두께측정업체가 측정하는 경우에는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자가 서명한 두께측정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사) 초음파 두께측정기에 의해 측정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수검자측에서 준비한 특별한 두께측정기 등에 의해 판두께가 적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측정치를 해당 개소의 판두께로 인정할 수 있다.

판 두께 측정표

측정장소		측정일자	
선명/공사번호		어선소유자	
어선제조사		측정자	

		L/3	L/2	2L/3	평균값	판두께 측정계산식 적용 값	
td	우현				-	(a+b)/2	
					-		
					-		
	좌현	최소 값					(a)
							-
							-
	최소 값				(b)		
ts	우현				-	(c+d)/2	
					-		
					-		
	좌현	최소 값					(c)
							-
							-
	최소 값				(d)		
tb	우현				-	(e+f)/2	
					-		
					-		
	좌현	최소 값					(e)
							-
							-
	최소 값				(f)		

(1/2)

$$75 \cdot a \cdot W \cdot L \cdot \alpha \leq D \cdot (2 \cdot td \cdot Bd + \frac{1}{3} \cdot ts \cdot D - \frac{2 \cdot tb \cdot B + ts \cdot D - 2 \cdot td \cdot Bd}{ts \cdot D + tb \cdot B}) \times 10^3$$

(1) $75 \cdot a \cdot W \cdot L \cdot \alpha$ (A) = _____

(2) (i) $td \cdot Bd =$ _____

(ii) $ts \cdot D =$ _____

(iii) $tb \cdot B =$ _____

(iv) $2 \times (iii) + (ii) - 2 \times (i) =$ _____

$$(v) (ii) + (iii) = \underline{\hspace{2cm}}$$

$$(vi) (ii) \times (iv) / (v) / 3 = \underline{\hspace{2cm}}$$

$$(vii) D \times (2 \times (i) + (vi)) \times 10^3 \quad (B) = \underline{\hspace{2cm}}$$

(A) \leq (B) --- 합격

(A) $>$ (B) --- 불합격

검사원 : (서명)

(2/2)

[별표 2]

계선 및 양묘장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배의 길이 (미터)	달		달줄						계선줄							
	중량 (킬로 그램)	수량	지름(밀리미터)					길이 (미터)	수량	지름(밀리미터)					길이 (미터)	수량
			마 가 라 보 피	나 이 보 보 피	폴 리 에 스 텔 보 보 피	비 에 보 보 피	폴 리 에 틸 렌 보 보 피			마 가 라 보 피	나 이 보 보 피	폴 리 에 스 텔 보 보 피	비 에 보 보 피	폴 리 에 틸 렌 보 보 피		
	하 가 중 의 적 어															
3미터	6.0	1	9	6	7	7	30	1	9	6	7	7	4.5	2		
3~4	8.0	1	10	7	8	8	30	1	10	7	8	8	6.0	2		
4~6	11.5	1	11	8	9	9	40	1	11	8	9	9	9.0	2		
6~8	17.0	1	13	9	11	11	40	1	13	9	11	11	12.0	2		
8~10	22.0	1	16	11	13	12	40	1	16	11	13	12	15.0	2		
10~12	27.0	1	18	13	15	14	50	1	18	13	15	14	18.0	2		
12~14	32.0	1	20	14	17	16	50	1	20	14	17	16	21.0	2		
14 이상	38.0	1	22	15	19	18	50	1	22	15	19	18	24.0	2		

[별표 3] <개정 2011. 01. 03> <개정 2019. 06. 24>

구명설비의 비치수량(제52조 및 제64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종류	제64조제1항제3호 적용 어선	그 밖의 어선	비고
구명 조끼 또는 어선용 구명의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	○어린이가 승선하는 경우 실제로 승선하 는 인원이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한 어선에는 「어선 설비기준」 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용 구명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명 부환	2개	-	-
자기점화등	1개	-	○주간에만 운항하는 어선에는 비치 제외
자기발연신호	1개	-	-
로켓 낙하산신호	4개	-	○주간에만 운항하는 어선에는 비치 제외

[별표 4] <개정 2014. 01. 01>

항해용구(제69조 관련)

명칭	비치수량	참 고	
호종	1	전장 20미터 미만의 소형어선에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레이다 반사기	1	주간 또는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및 내수면에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사용하는 어선은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시계	1	선장의 소지품으로 대용할 수 있다.	
라디오	1	단파대수신이 가능한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제72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비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대용 자기컴퍼스	1	2톤 미만의 내수면어업, 양식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비치를 아니할 수 있다.	
기적	1	전장 12미터 미만의 소형어선에는 기적의 대용으로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를 비치할 수 있다.	
선등	장등	1	전장 20미터 미만의 소형어선에서는 갑종장등, 을종장등 또는 병종장등으로 할 것
	현등	1	갑종 현등 또는 을종 현등으로 할 것. 다만, 전장 20미터 미만의 소형어선에서는 양색등 1개로서 대용할 수 있다.
	선미등	1	갑종 선미등 또는 을종 선미등으로 할 것
	정박등	1	갑종 백등 또는 을종 백등으로 할 것
	어업등	1	야간항행을 하지 아니하는 전장 20미터 미만의 어선에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성항법 장치	1	법 제5조에 따라 무선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01. 01>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이나 기타 물건을 예인하는 작업(접현하여 예인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소형어선에는 예선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선등은 갑종 예선등 또는 을종 예선등으로 한다. 2. 전장 7미터 미만의 어선으로서 최대속력이 7노트를 넘지 아니하는 소형어선에서는 장등, 현등 및 선미등의 비치에 대신하여 1개의 백색 전주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전장 12미터 미만의 소형어선(다른 선박 또는 물건을 예인하는 작업에 종사 			

하는 어선을 제외한다)에서는 장등 및 선미등의 비치에 대신하여 1개의 백색 전주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백색 전주등은 이를 정박등으로 겸용할 수 있다.
5. 소형어선 중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관실구 위벽만을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은 기적·호종, 선등, 레이다반사기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등에 대신하여 랜턴 1개를, 기적·호종을 대신하여 징 또는 썩과리 등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6. 제5호에 따라 설비를 면제받은 어선은 주간에만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01>
7.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은 시계비치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총톤수 5톤 미만 어선(「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겸용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으로서 연안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레이다반사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
9. 어업등을 비치하여야 할 어선의 종별과 종류 및 비치수량 등에 대하여는 「어선설비기준」 별표 22 비고 5를 준용한다.

[별표 5] <신설 2019. 06. 24>

한국형 구명뗏목에 비치하는 의장품(제2조제4호 관련)

의장품의 명칭	의 장 품 의 수	요 건
부룬	1개	물에 담겨 있는 경우 24시간 이상 가라앉지 아니하는 길이 30미터 이상의 부양성 있는 줄로 매여져 있는 것일 것
나이프	1개	1. 1개는 부양성 있는 손잡이 및 끈이 달리고 접을 수 없는 것일 것 2. 정원 12인 이하의 구명뗏목에는 1개만을 비치할 수 있다. 3. 평창식 구명뗏목에 있어서는 안전나이프 일 것 4. 페인터부착지점 부근의 천막의 외부에 설치된 주머니에 넣은 것일 것
베일러	1개	정원 12인 이하의 구명뗏목에는 1개만을 비치할 수 있다.
스폰지	2개	-
시앵커	1개	효과적인 것으로서 1개는 항구적으로 구명뗏목에 부착되어 있을 것
노	2개	부양성의 것일 것
수리용구	1식	공기실의 파손을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구를 주머니 또는 그 밖의 용기에 넣은 것일 것
음료수	정원 1인당 0.5리터	1. 수밀용기에 넣은 청수일 것. 2. 정원 1인당 최대 1.0리터의 음료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해수탈염 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
컵	1개	녹슬지 아니하며 눈금 있는 것일 것
배멀미 방지약	정원 1인당 6개	-
배멀미용 주머니	정원 1인당 1개	-
보온구	2개	「어선설비기준」 제27조에 적합한 것일 것
호각 또는 이와 같은	1개	29 - 가

의장품의 명칭	의 장 품 의 수	요 건
수준의 음향신호		
행동지침서	1권	구명뗏목에 승정 후 즉시 행동할 요령을 적은 것으로서 「어선설비기준」 별표 1의 비고 2에 적합한 것일 것
생존지침서	1권	구명뗏목 안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적은 것일 것
구명신호 설명표	1부	구명시설과 조난어선과의 통신에 필요한 신호의 방법과 그 의미를 설명한 것일 것
로켓낙하산 신호	2개	「어선설비기준」 제31조에 적합한 것일 것
신호홍염	3개	「어선설비기준」 제32조에 적합한 것일 것
수밀전기등	1개	1. 「어선설비기준」 제34조에 적합한 것일 것 2. 예비전지 1조 및 예비전구 1개를 수밀용기에 넣어둔 것일 것
일광신호용 거울	1개	「어선설비기준」 제35조에 적합한 것일 것
충기펌프 또는 풀무	1개	-
비고 : 의장품 중 음료수, 배멀미방지약, 배멀미용주머니, 보온구,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은 별도의 의장품 용기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명뗏목에 의장품이 별도의 용기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